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6
----------	------

2021년 6월 1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8일, 이동현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동현 의원)

1. 제안이유

-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 원칙 마련 및 교원들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자 함.
- 조문 오기(誤記)를 바로잡고,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용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전체 학교급의 노동인권교육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며, 현재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의2).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법적 근거 조항 오기 수정(안 제2조제4호).

다.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조항 신설 및 해당 조항 신설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조문 개정(안 제2조제6호~제8호).

라.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마. 각급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특수학교 학생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제1항~제2항).

바.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담당 교직원에 대한 교원연수의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제3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86호로 발의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 추진 상황에 맞는 노동인권교육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¹⁾

○ 그러나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의 청소년 노동실태조사²⁾에 따르면 현장실습생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 (38.1%), ‘과중한 업무 부담’ (33.3%) 등의 사고 위험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야, 너 등의 호칭과 반말, 무시’ (41.8%), ‘욕설, 폭언, 막말 경험’ (28.3%), ‘성적 수치심,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11.4%) 등의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청소년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진로·직업의 선택에 있어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노동법적 지식 중심의 권리교육을 마련한 것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이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실태조사 및 교육대상 확대 등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

1)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최근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 만 13세~만24세 청소년 526명과 공공기관, NGO 등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관계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응답자의 74.7%는 만 14~18세였음.

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노동인권 신장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4조제3항)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에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³⁾ 이어서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 교육청 조례의 경우 대부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안 제4조제3항에서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1] 13개 시·도 교육청 조례 실태조사 규정 현황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규정 없음	비고
3 (광주, 대전, 충북)	7 (강원, 경기, 경남, 부산, 세종, 인천, 제주)	3 (울산, 전남, 충남)	실시 주기를 규정한 곳은 1개임 (대전, 1년)

2)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3) 2018년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총 8,6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47.8%가 노동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일반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서도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2]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 운영 현황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시간	학교 수	1교 당 연간 평균 시간	총 시간	학교 수	1교 당 연간 평균 시간	총 시간	학교 수	1교 당 연간 평균 시간
2,381	607	3.9	1,142	386	3.0	1,813	320	5.7

○ 현행 조례는 노동인권교육의 의무 실시 대상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⁵⁾ 그 외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수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바,

안 제8조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인권교육 수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특수학교의 직업교육훈련·현장실습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⁶⁾ 안 제8조제2항에서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해당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2021.6.4.).

4) 「학교 노동인권교육 통계조사」(교육부, 2019.9.)

5) 제8조(노동인권교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서울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서울시교육청, 2020.2.5.)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2조제4호 중 “제90조제10호”를 “제90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8.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으로 한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으로,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을 “담당 교직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margin: 0;"><u><신 설></u></p> <p style="margin: 0;">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u>제90조제10호</u>에 따른 학교를</p>	<p style="margin: 0;"><u>제1조의2(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 style="margin: 0;">1.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노동인권 옹호에 기여한다.</p> <p style="margin: 0;">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 style="margin: 0;">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margin: 0;">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p> <p style="margin: 0;">제2조(정의) ----- ----- 1~3. (현행과 같음) 4. ----- ----- <u>제90조제1항제10호</u>-----</p>

말한다.

5. (생략)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신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

② (생략)

<신설>

제8조(노동인권교육)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

-----.

5. (현행과 같음)

6. "일반고등학교"란 -----

----- 학교를 말한다.

7.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8.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②(생략)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

-----.

제9조(교원연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혹은 현장실습----- 담당 교직원에게
-----.